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78호

#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1.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가능

**< 추진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2호)

## 2.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필수 자격요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최근 5년('18. 1. 1. ~ 신청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21.6.3. 이전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21.6.3. 이후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또는 **성공**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 3.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 2023. 2. 22.(수) ~ 2023. 3. 23.(목), 18:00 까지

○ 접수 기간 : 2023. 3. 9.(목) ~ 2023. 3. 23.(목), 18:00 까지

## 나. 신청 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s://www.f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구 분 | ①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
|---|---|
| **등록방법** |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 **등록 매뉴얼** |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br>○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br>※ 동 공고 별첨 자료 참조 |
| **문의처**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
| **구 분** | **②접수 방법 안내** |
| **접수방법** |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s://www.f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 **문의처** | ○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061-338-9797<br>○ (시스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지보수팀 : 061-338-9846 |

## 5. 제출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구분 | 관련 서식 |
|---|---|---|---|
| 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 필수 | 첨부 1 |
| ②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 2 |
| ③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필수 |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구분 | 관련 서식 |
|---|---|---|---|
| ④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 ⑤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 필수 | 첨부 3 |
| ⑥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필요시 | 첨부 4 |
| ⑦ |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필요시 | - |

## 6. 추진 및 평가절차

### 가. 추진절차

| | 시행주체 | 세부내용 |
|---|---|---|
| **제품등록** | **신청기업** | ㅇ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b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br>* 제품 평가 기간 전까지 등록 가능 |
| ⇩ | | |
| **신청** | **신청기업** |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 ⇩ | | |
| **제품 평가·심사** | 평가기관 | ㅇ 신청서류 검토<br>ㅇ 기술혁신성 평가(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br>ㅇ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진행) |
| ⇩ | | |
| **심의예정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 ⇩ | | |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 ㅇ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
| ⇩ | | |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 ㅇ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업) |

* (신청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중소기업, (평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나. 평가절차

| | 시행주체 | 세부내용 |
|---|---|---|
| **서류검토** | 평가기관 | ㅇ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br>ㅇ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 ⇩ | | |
| **조달 적합성 검토** | 조달청 | ㅇ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br>*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접수 반려 |
| ⇩ | | |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ㅇ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 평가<br>ㅇ 평균 70점 이상 통과(최고, 최저점수 제외) |
| ⇩ | | |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ㅇ 제품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여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성능확인 등 심사<br>ㅇ 평가위원회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시 통과 |
| ⇩ | | |
| **종합심사** | 종합심사위원회 | ㅇ 1·2차 심사 결과의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 등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심사<br>ㅇ 종합심사위원회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시 예정 공고 |
| ⇩ | | |
| **심의 예정공고** | 평가기관 | ㅇ 농림축산식품부·평가기관에 20일 이상 공고<br>ㅇ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추천<br>ㅇ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 후,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 |
| ⇩ | | |
| **종합심사위원회**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ㅇ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 다. 평가기준

| 구분 | 심 사 기 준 |
|---|---|
| 발표평가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br>**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br>◦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제품인지 여부<br>*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br>**나. 공공구매 필요성**<br>◦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br>*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br>*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br>**다. 현안의 시급성**<br>◦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br>*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br>*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br>**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br>◦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br>*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br>*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br><br>**2. 시장성(20)**<br>**가. 기대 시장규모**<br>◦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br>*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br>◦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br>*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br>**나. 타 산업 파급성**<br>◦ 공공구매 확장성<br>*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br>◦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br>*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br>*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br><br>**3. 혁신성(40)**<br>**가. 기술·제품의 신규성**<br>◦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br>*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br>*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br>**나. 기술·제품의 탁월성**<br>◦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br>**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br>◦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br>◦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현장평가 | **1. 제품의 확인**<br>◦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br>**2. 연구개발기술 적용**<br>◦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br>**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br>◦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br>**4. 제품의 성능 확인**<br>◦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br>**5. 기타 확인사항**<br>◦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7.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
| **농림축산식품부**<br>(과학기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044-201-2456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r>(기술상용화실) | 신청・접수,<br>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061-338-9797 |
| | 신청·접수 시스템 관련 | 061-338-9846 |
| **조달청** |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정부조달 콜센터<br>(국번없이) 1588-0800 |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공고 참조

<첨부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 | | |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 구분 | 모델명 |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명 | 물품식별번호 | 식별명 | 제조여부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기술구분

| 코드 구분 | 중심 분야 | | 관련 분야1 | | 관련 분야2 | | 관련 분야3 | | 관련 분야4 | |
|---|---|---|---|---|---|---|---|---|---|---|
|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 | | %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유형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8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
|---|---|
| 붙임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br>2. 제품 규격서<br>3.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br>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br>5.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첨부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 | | | | |
|---|---|---|---|---|
| 사업명 | | | | |
| 내역사업명 | | | | |
| 과제명 | 국문 | | | |
| | 영문 | | | |
|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 직급(직위) | |
| 연구기관<br>(협동 · 공동 · 위탁) | 참여형태 | 기관명 | 책임자 성명 | 직급 |
| | | | | |
| | | | | |
| 총 연구기간 | 20XX. X. X. ~ 20XX. X. X. | | | |
| 연구내용 요약 |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 | |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 연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 1차년도(20XX) | | | |
| 2차년도(20XX) | | | |
| 3차년도(20XX) | | | |
| 합계 | | | |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구분 | 모델명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물품식별번호 | 제조여부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신청제품의 농식품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농식품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 · 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2. 기술의 혁신성

###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2.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나. 시장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2.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다. 혁신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기술 · 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2. 기술 · 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나. 기술개발방법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국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 · 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 · 인증실적 현황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 | 종류 | 만료기간 | 관련법령 |
|---|---|---|---|
| 1 | | | |
| 2 | | | |
| 3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 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첨부 3>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제품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첨부서식 3-1]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 담 당 자 | |
|---|---|---|---|
| | |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 혁신제품명 | | | |

| 구분 | 물품분류번호 (8자리)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모델명 | 예상단가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
| 기술인증(특허 등) | ※ 특허번호(특허명칭), 특허원부는 별도 제출 |
| 법정의무이행자료 | ※ 해당되는 경우 별첨(별지1-1호)자료를 참고하여 별도 제출 |
| 성능기준 | ※ 본 제품의 납품을 위한 필수 성능기준의 만족여부를 아래표로 작성하시고 관련자료(시험성적서 등) 별도 제출 |
| 납품실적 | ※ 해당물품의 납품실적이 있을 시 작성하시고 증빙자료 별도 제출 |
| 우수조달물품지정여부 | □유(해당되는 우수제품 지정번호 기재) □무 |
|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여부 | □유(해당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번호 기재) □무 |
| MAS계약 여부 | □유(해당되는 계약번호 기재) □무 |

### □ 성능 기준(양식)

| 품질기준 | | | | | 비 고 |
|---|---|---|---|---|---|
| 시험항목 | 단위 | 목표기준 | 달성실적 | 검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는 귀 사의 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여부에 활용되며 만약 허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0000 년 00 월 00일

업체명 (대표자 : 000 ) 직인날인

[첨부서식 3-2]

# 제 품 규 격 서(일반제품)

## 제품규격서
## (제품명)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 구분 | 모델명 | 물품분류번호 (8자리) | 물품분류명 (품명)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제조여부 (자체/위탁)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총괄표]**

| 모델명 | 재 료 | 자재구성표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자재소요량]**

| 순번 | 모델명 | 규격치수 (mm) | 자재소요량 | | | | | 원산지 |
|---|---|---|---|---|---|---|---|---|
| | | | 품명 | 모델(부품)명 | 규격/재질 | 단위 | 수량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요약표
 6-2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중심)
 6-3 성능 및 시험방법(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검사 및 시험 중심)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10.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기재요령**

①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② (제품명)의 규격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첨부서식 3-2]

# 제 품 규 격 서(소프트웨어 제품)

## 제품규격서
## (제품명)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 구분 | 모델명 | 물품분류번호 (8자리) | 물품분류명 (품명)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제조여부 (자체/위탁)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2-2 소프트웨어(S/W)설치를 위한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
(※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은 구매자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써, 납품 시 불포함)

| 구분 | 물품목록번호 | 모델명 | 권장사양(H/W) | 운영환경 |
|---|---|---|---|---|
| 1 | | | | |

 2-3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 적용자재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 | |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 필요

 2-4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 구분 | 인증(등록)번호 | 기술명(발명, 고안 명칭) /품명(품목) | 발행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3. 구성, 재료

| 소프트웨어 모델명 | 구분 | 종류 | 수량 |
|---|---|---|---|
| | | | |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요약표
 6-2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중심)
 6-3 성능 및 시험방법(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검사 및 시험 중심)

7. 하자보증

| 무상하자보수 내용 | | | 설 명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원범위 | |
| 기술지원 | | | |
| 제품지원 | | | |
| 교육지원 | | | |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10.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첨부서식 3-3]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table>
<tr><td colspan="2">주관 부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신청 기업<br>(기관 작성)</td><td>이름(회사명)</td><td colspan="2">사업자(법인)등록번호</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 colspan="3">대표자</td></tr>
<tr><td rowspan="4">혁신제품<br>현황<br>(기관작성)</td><td>명 칭</td><td colspan="3">▸ 혁신제품명 :
<table>
<tr><th>구분</th><th>물품분류번호<br>(8자리)</th><th>세부품명</th><th>세부품명번호<br>(10자리)</th><th>물품식별번호<br>(8자리)</th><th>모델명</th></tr>
<tr><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용 도</td><td colspan="3">▸</td></tr>
<tr><td>기 능</td><td colspan="3">▸</td></tr>
<tr><td>인 증</td><td colspan="3">▸ 기술인증 : 특허, NEP 등<br>▸ 품질인증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br>▸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td></tr>
<tr><td colspan="2">검토의견</td><td colspan="2"></td></tr>
</table>

<첨부 4>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 | | | |
|---|---|---|---|---|
| 회사개요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 | |
| 신청제품명 | | | | |
| 물품식별번호 | | | | |
| 법정의무 인증자료 1) | 연번 | 종류 | 유효기간 | 관련법령 |
| | 1 |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 만료기간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 2 | ○○인증 | 19.5.28 ~ 24.5.27 | - |
| | 3 | | | |
| | 4 | | | |
| | 5 | | | |

1) 법정의무인증자료 :

① 종류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② 유효기간 : 해당 법정의무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예시) 19.5.28~24.5.27 또는 만료기간 없음

③ 관련법령 :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참고사항 : 인증, 승인, 제도와 관련된 세부 지침사항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standard.go.kr/)」내 인증제도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품 별 대상여부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http://www.1381call.kr)」에서 상담가능